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제345회 임시회

2016.01.29.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의안번호: 제329호
- 제출일자: 2016년 01월 15일
- 회부일자: 2015년 01월 15일

3. 제안이유

2016. 3. 1.자 본청 기구 개편으로 국별 분장사무 및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함(안 제5조의2)

나.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 1)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 2)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무
- 3)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다.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 1)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 2)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 3)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예 관한 사항

- 라.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을 “학생배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6호)
- 마.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 1)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
  - 2) 법제에 관한 사항
  -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4)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바.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 1)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2)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 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 중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을 삭제하고,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함(안 제10조제8호 및 제11호)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년 3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국별 사무분장 및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5조의2는 “행정관리국” 을 “행정국” 으로 변경하고,
- 안 제6조제1항은 교육국장 분장사무중 제4호(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제12호(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무), 제17호(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제21호(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제22호(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7조는 “(행정관리국)” 의 제목을 “(행정국)” 하였고, 안 제7조제1항 제6호의 “학생 수용계획” 을 “학생배치계획” 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7조제1항 행정국장 분장사무중 제9호(의회협력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제13호(법제에 관한 사항), 제14호(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8호(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2호(교육공무직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23호(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제24호(학교급식에 관한 사항)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 중 제8호(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1호(교육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를 신설하였음.
- 본 조직 개편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조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규모의 적정성 및 업무의 능률성을 유지하였으며,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현장의 업무갈등을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됨.
- 다만, 별첨②의 입법예고 의견 검토 결과 ① 교육복지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② 학교급식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③ 교육공무직원 행정국 이관 반대 미수용과, 교육국장 분장사무중 삭제된 제4호의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업무와 행정국장 분장사무중 삭제된 제9호, 제13호, 제14호, 제18호 업무의 사무분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의2(국의 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u>행정관리국</u>을 둔다.</p> <p>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 <u>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u></p> <p>5. ~ 11. (생략)</p> <p>12. <u>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무</u></p> <p>13. ~ 16. (생략)</p> <p>17. <u>학교평가에 관한 사항</u></p> <p>18. ~ 19.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② (생략)</p> <p>제7조(<u>행정관리국</u>) ① <u>행정관리국</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6. <u>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p> <p>7. ~ 8. (생략)</p>	<p>제5조의2(국의 설치) ----- ----- ----- <u>행정국</u>-----.</p> <p>제6조(교육국)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5. ~ 1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13. ~ 16.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18. ~ 19. (현행과 같음)</p> <p>20. <u>국외유학에 관한 지도</u></p> <p>21. <u>학교보건에 관한 사항</u></p> <p>22. <u>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u> <u>에 관한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u>행정국</u>) ① <u>행정국장</u>-----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학생배치계획</u>----- --</p> <p>7. ~ 8.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9. <u>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u></p> <p>10. ~ 12. (생략)</p> <p>13. <u>법제에 관한 사항</u></p> <p>14. <u>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u></p> <p>15. ~ 17. (생략)</p> <p>18. <u>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u></p> <p>19. ~ 21.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② (생략)</p> <p>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7. (생략)</p> <p>8. <u>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u></p> <p>9. ~ 10. (생략)</p> <p><u>&lt;신설&gt;</u></p>	<p><u>&lt;삭제&gt;</u></p> <p>10. ~ 12.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u>&lt;삭제&gt;</u></p> <p>15. ~ 17.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19. ~ 21. (현행과 같음)</p> <p><u>22.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u></p> <p><u>23.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u></p> <p><u>2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업무)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9. ~ 10. (현행과 같음)</p> <p><u>11.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p>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첨****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1 입법예고 의견 수합 현황**□ **입법예고 현황**

- 공고번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5-294호
- 예고기간: 2015. 12. 24. ~ 2016. 1. 13.(20일간)
- 예고방법: 도보, 공문게시,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

□ **의견 제출 현황(총 188건)**

구분	1 제출 유형		2 제출 방법			비고
	개인	단체*	팩스	직접	전자문서	
사례수	185	3	184	3	1	

\* 단체: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충청북도영양교사회

□ **의견 내용별 분류**

항목	내용 유형	비고
①	학부모 지원 업무의 행정국 이관 반대	
②	공익법인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③	교육행정 전산화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④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⑤	교육복지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항목	내 용 유 형	비고
⑥	학교급식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⑦	교육공무직원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⑧	지방공무원 노조 담당부서 폐지 반대	
⑨	공보관의 장학관 전환 반대	
⑩	국외유학, 교육정보화계획, 학교보건 업무 교육국 이관 필요	
⑪	기타(일선학교에서 시행처를 기준으로 공문서를 분류하므로교육국 업무의 행정국 이관 반대, 인력증원 없는 행정국 이관 반대, 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 필요 등)	

## 2 입법예고 의견 검토 결과

연번	제출 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이유(검토 의견)
1	<p>[의견유형] ①번 - ④번</p> <p>☞ 학부모지원 업무, 공익법인, 교육행정 전산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행정국 이관 반대</p>	수용	<p>○ 단위학교의 업무분장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교육국 유지</p>
2	<p>[의견유형] ⑤번</p> <p>☞ 교육복지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p>	미수용	<p>○ 교육복지 업무는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교육정보화지원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로써,</p> <p>○ 행정국으로 이관한다고 하여 행정실에 업무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p>
3	<p>[의견유형] ⑥번</p> <p>☞ 학교급식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p>	미수용	<p>○ 학교에서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의 배치 여부에 따라 업무 소관이 구분되고 있고, 영양교사의 직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청의 소관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본적인 업무소관이 변경되지는 않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학교급식법 시행령]</p> <p>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li> <li>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li> <li>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li> <li>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li> <li>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li> </ol> </div>

연번	제출 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이유(검토 의견)
4	<p>[의견유형]</p> <p>⑦번</p> <p>☞ 교육공무원 업무의 행정국 이관 반대</p>	미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공무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현재 기획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써,</li> <li>○ 기획관의 통솔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으로 이관</li> </ul>
5	<p>[의견유형]</p> <p>⑧번 - ⑪번</p> <p>☞ 지방공무원 노조 담당 부서 폐지 반대 등</p>	검토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국(局)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li> <li>○ 담당 폐지, 부서장 직급 등은 기구규칙 개정사항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li> </ul>